

민주주의의 새로운 주체

자유와 공화를 넘어 자율 민주주의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미완성 초고입니다.

인용은 하지 마시고, 코멘트는 환영합니다.

김동일

(경상국립대, dikim@gnu.ac.kr)

1. 들어가는 글

정치 체제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의 이상은 집단적 의사결정의 권위적 지배를 받는 구성원이 바로 그 결정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민주주의의 주체는 소속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동료들과 논의하고, 결정 사안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과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소속 집단의 결정 사항을 자발적으로 수용 또는 거부할 수 있는 등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행위자를 말한다.

근현대 민주주의의 주체는 그동안 크게 두 가지 전통에 따라 그 정체성을 발전시켜왔다. 첫째는 자유주의 전통으로서, 이에 따르면 자기 소유권에 근거하여 자기의 신체를 하나의 재산으로 소유하는 소유적 주체가 민주주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둘째는 공화주의 전통인데, 여기에서도 각자가 자기 소유권에 따라 누구도 다른 사람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서로 평등한 주체로서 민주주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유주의 전통의 민주주의는 자기를 소유하는 개인의 자기 권위를 존중하며 그러한 개인들의 집단적 동의를 통해 집단의 의사결정에 권위를 부여한다. 공화주의 전통의 민주주의는 서로 평등한 주체의 평등한 권력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법의 권위와 지배를 중시한다. 소유적 주체의 자유 민주주의와 평등한 주체의 공화 민주주의는 각각 나름 문제로 삼는 정치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의미 있는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자유 및 공화 민주주의 모두 이상적 민주주의의 주체적 행위자가 갖추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를 소유하는 주체라고 해서 의사결정 과정과 실천에 필요한 지능과 자유의지를 반드시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평등한 주체 개념도 서로 평등한 지위를 가진 개인이라는 사실 외에는 결정 및 순응 과정에 필요한 지능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없다. 두 전통 모두 지능과 자유의지를 필요충분조건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자유 및 공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

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집단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결정에 참여할 때는 적어도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투표와 같은 최종 결정에 단순히 참여하기 이전에,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결정 사항에 관한 충분한 성찰, 토의, 그리고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두 요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서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상적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역량을 자유 민주주의의 소유적 주체 또는 공화 민주주의의 평등한 주체가 가지고 있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이 글은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고, 그 이상에 못 미치는 민주주의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의사를 지능적으로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데 각각 필요한 지능과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로서 자율적 주체가 소유적 또는 평등한 주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근현대 민주주의가 자기소유권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통해 발전해 왔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것은 자기소유권이 각 전통에 따라 다르게 해석됨으로써 소유적 주체, 평등한 주체, 그리고 자율적 주체의 근거로 이해되었으며, 각 주체는 자유 민주주의, 공화 민주주의, 그리고 자율 민주주의의 행위자로 각각 기능한다는 설명을 포함한다. 나오는 글에서는

2. 자유 민주주의 소유적 주체

근현대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전통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하나의 정치적 체제로서 민주주의가 고전 자유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종합적 설명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지만, 이데올로기적 설명으로서는 적절하다. 고전 자유주의가 근현대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고, 그것이 없었다면 현실에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적절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고전 자유주의라는 정치 이데올로기는 어디에서부터 유래한 것인가? 예를 들어, 고전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로크의 정치철학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유력한 답변 중 하나는, 그 당시 현실의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부터 고전 자유주의가 유래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의 정치 체제란 다름이 아니라 군주제와 귀족제의 혼합 형태였다. 군주제든 귀족제든 그것이 민주주의의 이상과 관련해서 가지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체가 그 결정에 순응해야 하는 대다수가 아닌 특정 개인 또는 소수라는 것이다. 특정 개인/소수에게만 집단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주어졌으며, 그 근거로서 바로 그들만이 당시 경제 체제의 근간인 토지를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고전 자유주의가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근현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서 고전 자유주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토지라고 하는 재산은 사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물이자 공유물이며, 그것을 이용해서 일구어내는 생산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동력은 바로 자기 자신의 것이며, 그러한 자기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것이라는 성찰이다. 달리 말해, 자기소유권이 사유재산권의 중요한 출발점이고,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개인이 자기소유권자로서 궁극적으로는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전 자유주의가 주장한 자기소유권을 자유지상주의는 특히 소유 개념으로 해석한다. 로크는 자기소유권으로부터 출발해서 사유재산권을 거쳐 정치적 주권을 주장한다. 이 과정을 재해석한 노직은 자기소유권을 자기를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한다고 알려져 있다. 심지어 노직은 자신을 노예로 팔 수 있을 정도로 자기소유권을 소유 개념으로 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유권은 사용 및 수익뿐만 아니라 처분의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자유지상주의에 따르면, 자기를 소유할 수 있는 개인은 그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해낸 사유재산에 대해서 배타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의 근거로서 자기를 소유할 수 있다는 자연권적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치적 주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자유주의 전통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사용 또는 심지어 처분하는 것과 그때 다른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자유주의 전통에서 불간섭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의 자연스러운 결과, 즉 자기소유권을 (사적) 소유 개념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자기소유권을 소유 개념으로 해석하고 불간섭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전통은 이론적으로나마 모든 개인에게 정치적 주권을 가져다줌으로써 소수의 결정 권한에 종속되어 있었던 다수의 개인에게 정치적 해방을 선사했다. 그동안 소수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순응해야만 했던 다수도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형식적으로나마 가지면서 근현대 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있었다. 이것은(자기소유권은) 당장 모든 개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개인은 자기가 따라야 하는 결정을 집단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충분했다.

소유 개념으로 해석된 자기소유권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정치적 주권의 근거가 되었고, 이것은 정치권력이 주권자로부터 파생되어야 한다는 이론으로 발전한다. 집단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그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 신, 군주, 귀족, 또는 특정 소수 집단에 배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소유권을 가진 모든 개인에게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개인이 집단적으로 동의한 대표자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이론이다. 주권재민이론은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 및 결정의 강제 과정에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억압되었던 다수에게 권한과 권력을 안겨다 주었다는 뜻에서 근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달리 말해, 자기를 재산으로 소유하고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정치적 주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자유 민주주의는 재산의 지배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론으로서의 주권재민은 현실에서는 대의제와 다수결의 형태를 띠 수밖에 없다. 모든 인민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모든 인민이 만장일치로 의사를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표자를 선발해서 집단의 의사결정을 맡기고, 주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현실적이다. 이론적으로 주권자인 인민은 현실에서는 유권자인 시민이 되고, 다수의 결정과 대표자의 권한에 순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유 민주주의가 말하는 민주 시민의 덕성이다.

자기를 소유하고 사유재산을 가진 소유적 주체로서 정치적 주권을 가질 수 있었던 인민이 민주 시민이 되어 정치적 책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불간섭의 자유이다. 자기소유권을 소유 개념으로 해석하는 자유주의 전통의 민주주의 주체는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사유재산이나 사적 생활에 대해서는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때 불간섭의 자유는 심지어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그러나 재산의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의 소유적 주체는 (1)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능을 필연적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2)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므로 집단적 결정에 순응할 때 자유의지를 발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를 조금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유주의 전통에 따르면, 자기 몸을 하나의 재산으로 소유하는 소유적 주체는 사유재산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상과 행동에 대한 자유와 주권을 가진다. 따라서 집단의 의사를 따라야 하는 경우 그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행동을 주권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타인이 결정한 것을 따르는 것은, 비록 그 행위의 내용이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유의지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고등학생이 한참을 놀기만 하다가 이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려고 한다. 마침 이때 그의 어머니가 이제 공부를 좀 하라고 훈계를 한다. 공부해야 한다는 학생의 생각은 어머니의 생각과 일치한다. 그러나 학생이 어머니의 훈계를 듣게 된 이상 공부를 하는 행위는 더는 자기의 자유의지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된다. 따라서 그 학생은 공부하기가 싫어진다. 왜냐하면 자기의 행동에 대한 주권을 침해받았으며 자기의 행동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몸의 위치와 방향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소유적 주체의 권리는 그 위치와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지능을 보장하지 않는다. (형식적) 권리가 능력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소유적 주체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후보를 탐색하고 그 정책을 판단하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 등에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적 능력을 반드시 가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익을 돌아보고 소수와 약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판단하고 주장할 수 있는 합당한 지능을 필연적으로 가지지 않는다. 정치적 주권을 가진 소유적 주체는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다.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소유적 주체가 합당한 지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무관한 것이다. 참정권이 없어도 기본적 지능이 있을 수 있으며, 기본적 지능이 있다고 해서 참정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보통 선거권이 도입되던 초기에 여성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성이 투표에 참여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은 자기소유권이 없으며 자기의 행동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책임도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후에 여성이 보통 선거권을 가지게 된 것도 전에는 없던 지능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행동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는 인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즉, 자기 소유권을 소유 개념으로 해석하는 자유주의 전통은 자기 몸과 행동에 대한 주권에만 근거해서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개인이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사익을 위해서든 공익을 위해서든) 필요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제하기만 할 뿐이다.

(2) 자유 민주주의의 소유적 주체는 집단의 의사를 따르는 과정에서 자유의지를 온전히 발휘한다고 볼 수 없다. 집단적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유적 주체가 누리는 권리는 자유 또는 특권 형태의 권리로서,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부재하므로 주어지는 권리다. 즉, 최소 연령 등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주어지는 참정권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소유적 주체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참여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집단의 의사를 따라야 하는 국면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고, 그 결정이 자기 뜻과 일치하거나,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순응하겠다는 의사를 어떤 식으로든 표현했을 때만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결정 내용이 자기 뜻과 어긋난다거나, 또는 결정과 상관없이 순응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면, 집단의 의사를 따르는 행위는 자유의지가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단순히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결정된 의사를 따라야 할 때 자기의 자유의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 과정에 참여했고 그 결과가 자기 뜻과 일치할 경우, 또는 결정 과정에 참여했든 하지 않았든 그 결과에 순응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 한해서만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다.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단순히 참여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그 과정에 필요한 지능과 결정 사항에 순응할 때 발휘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보장되지 않는 소유적 주체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완성하는데 충분한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 단순한 참정권은 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능과 결정에 순응할 때 필요한 자유의지를 보장하지 않는다. 물론 집단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러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킨 것은 자유 민주주의의 큰 업적이다. 그러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불간섭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완성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자유주의 전통, 특히 자유지상주의가 자기소유권을 배타적 소유 개념으로 해석한 결과이자 한계로 보인다. 자유 민주주의의 소유적 주체 개념은 근현대 민주주의의 훌륭한 출발점이지만 민주주의의 이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다.

3. 공화 민주주의 평등한 주체

공화주의 전통의 (근현대) 민주주의, 즉 공화 민주주의는¹⁾ 자유 민주주의와 역사적 궤를 같이하지만, 철학적 그리고 정치적 결을 달리한다. 근현대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전통과 공화주의 전통을 동시에 품고 있다.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합작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자기 소유권, 사유재산권, 그리고 정치적 주권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와 평등한 지위의 관점에서 왕이나 귀족의 지배를 거부하는 공화주의 전통이 모든 개인의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평등한 추구권을 주장하는 미국 독립과 ‘자유, 평등, 박애’의 프랑스 혁명 정신에 각각 공존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에서 만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가 정치권력의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공화 민주주의는 정치권력이 행사하는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정치권력이 자기 주권을 가진 인민에게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화주의는 그렇게 나온 정치권력이 행사하는 권위는 결코 정치적 지위에서 위계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지위에서 위계적 질서란 없는 것이며,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든 그 권위에 순응하든,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정치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공화 민주주의는 주장한다.

권위자든 피권위자든 모두가 정치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아이디어는 자기소유권을 평등 개념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기를 소유하는

1) 공화주의는 보통 고전 공화주의와 시민 공화주의로 그 전통을 세분화하는데(Lovett 2022), 이 글에서는 근현대 민주주의의 발전에 자유주의와 함께 공헌한 시민 공화주의 전통을 중심으로 공화 민주주의를 논의한다.

것은 자기 자신 외에는 없으므로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소유하고 지배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논리가 모두에게 적용되면 그 누구도 다른 누군가를 지배할 수 없으므로 모두가 평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자유주의 전통이 자기소유권을 소유 개념으로 해석하고 사유재산권과 정치적 주권 등을 주장할 때, 공화주의 전통은 자기소유권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평등한 지위의 근거로 해석하고 정치적 평등을 주장한다.

따라서 공화주의 전통에서 자유는 자유주의 전통에서의 그것과 다른 개념을 가진다. 후자에서는 자기와 자기의 소유물 그리고 자기의 사상과 행위 등에 대해서 간섭받지 않는 불간섭을 자유라고 이해할 때, 전자에서는 그 모든 부분에서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 비지배를 자유라고 이해한다. 불간섭과 비지배는 유사해 보이지만 다르다. 페팅의 설명과 같이, 노예를 지배하는 주인은 노예의 행위에 간섭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노예를 향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자유주의가 문제 삼는 간섭이 일차원적 권력이라면, 공화주의가 문제 삼는 지배는 이차원적 권력이라고 볼 수 있다(Lukes 1974). 불간섭의 자유주의적 자유가 명시적/은밀한 강제와 강요에 대한 거부라면, 비지배의 공화주의적 자유는 잠재적/은연중 조작과 조종으로 이루어지는 지배에 대한 거부라고 할 수 있다.

공화 민주주의에서 평등한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고 비지배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입헌주의와 법의 지배이다. 법은 정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지만, 그 실질적 지배의 차원에서는 일반성과 형평성을 생명으로 한다. 법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일방적 지배를 방지하고 모든 인격을 일반적으로 지배하고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됨으로써 정치적 지위의 평등을 추구한다. 따라서 공화 민주주의의 평등한 주체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만 그 정치적 평등성을 보호받고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법의 지배는 피권위자, 소수, 그리고 약자의 정치적 평등을 주장하고 기록하는 데 크게 이바지해왔다. 권위자와 피권위자의 권력 불균형은 입헌주의에 따라 법적 근거가 있는 권위의 집행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 특히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은 헌법적으로 지지받음으로써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약자로 지목되어 온 여성과 빈곤층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도 다양한 법적 제도 등으로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공화 민주주의의 주체에게 부여된 평등한 지위는 (1)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능을 보장하지 않으며, (2) 입법에서 정치성, 해석에서 자의성, 그리고 실제 적용에서 강제성을 넘어서지 못하므로 법의 지배에 대한 순응은 자유의지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

(1) 공화 민주주의의 주체가 보장받는 평등한 지위의 근거는 자기소유권이고 이것은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지능과 무관하다. 그 지능이 없어도 공화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고, 그 지능이 있다고 해서 그런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모든 개인 각자가 자기를 소유하기에 다른 누구도 자기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지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권위적 강제를 도출해내는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고 결정된 의사에 순응할 때도 그 권

위의 위계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다.

정치적 지위에서 평등한 주체라고 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능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평등의 근거와 지능의 기초는 같지 않다. 정치적 평등은 자기소유권에 대한 평등 개념적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반면, 지능은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판단 능력과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타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소유하므로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로부터 내가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서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도출할 수는 없다.

(2) 공화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법의 지배는 불가피하게 입법과 법의 해석 및 적용 과정을 포함하는데, 입법의 정치성과 해석의 자의성 그리고 적용의 강제성으로 인해 법의 지배 과정에서 시민의 자유의지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정법의 입법은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며 특히 그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권한은 정치적으로 주어지거나 결정되므로 입법에서의 정치성은 피할 수 없다. 이것은 결국 세워진 법을 준수해야 하는 시민의 자유의지가 법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 권한자의 민주적 선출 과정을 통해 입법에서의 정치적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평등이 곧 자유의지의 표현은 아니다. 특히 결정 과정에서 소수에 속한 구성원은, 비록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휘할 기회를 평등하게 누렸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자신의 자유의지가 좌절된 것이다.

법의 해석 과정에서 자의성은 입법 과정에서 좌절된 자유의지를 다시 한번 무시한다. 법은 해석될 때 비로소 지배를 시작한다. 법의 해석도 그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 해석의 권한을 부여하는 일 역시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해석의 권한을 가진 자는 일관성을 지키려고 하지만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자의적 판단이 개입된 법의 해석이 그것을 따라야 하는 시민의 자유의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입법되고 해석된 법은 실제로 적용될 때 그 지배를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는 구성원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사라진다. 법의 실제 적용은 강제성을 띠기 때문이다. 강제된 법 적용을 따르는 것이 자유의지와 부합할 수는 없다. 법의 내용과 해석이 비록 자기 생각과 일치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법의 실제 적용은 강제되는 것이며, 강제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의지를 발휘하는 것의 정반대이다.

다른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입법하고, 다른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을 포함하는 법, 그러므로 자기의 자유의지와는 정반대로 지배하는 법, 그런 법의 지배는 자유의지를 보장하기는커녕 무시하는 경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만 가질 뿐,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능과 결정의 내용을 따라야 할 때 발휘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보장받지 못하는, 공화 민주주의의 평등한 주체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자기소유권에 근거해 비지배의 자유와 정치적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차원적 권력의 지배를 지적하고 거부/저항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자기소유권을 평등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비지배의 자유와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는 제도로서 법의 지배는 공화 민주주의의 훌륭한 장치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평등하다고 해서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지능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 입법, 자의적 해석, 그리고 강제적 적용을 포함하는 법의 실제 지배 과정은 그 지배에 순응하는 구성원의 자유의지를 좌절시키는 경향이 크다.

4. 자율 민주주의 자율적 주체

자율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이 요구하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이상은 입법자와 준법자의 일치이고 피지배자의 지배이다. 민주주의의 현실은 자유 민주주의의 장치이자 한계인 재산의 지배이고, 공화 민주주의의 특징이자 한계인 법의 지배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의 지배와 법의 지배는 모두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문제를 각각 가지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의 행위자는 소유적 주체이고, 공화 민주주의의 행위자는 평등한 주체이다. 자율 민주주의의 행위자는, 아래에서 논의하듯이, 자율적 주체로서 지능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율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 민주주의의 자율적 주체도 자기소유권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소유적 주체나 평등한 주체와는 다르게 자기소유권을 해석한다. 자율적 주체는 소유적 주체와 같이 자기를 소유한다고 해서 자기를 물건과 같이 재산으로 소유하고 그에 대한 처분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평등한 주체와 같이 누구도 자기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해서 타인을 위해 자기를 양보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자율적 주체는 소유적 주체 및 평등한 주체와 색다른 자기 개념을 가진다.

첫째, 자율적 주체는 자기를 소유할 때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활용하여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관리하고 책임진다. 예를 들어, 집의 소유자는 집에 대한 사용권 및 수익권뿐만 아니라 처분권을 배타적으로 가지지만, 세입자는 사용권과 수익권을 가질 뿐 처분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세입자는 집을 활용하여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수익을 창출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다. 그러나 집을 팔아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안 된다. 세입자는 집을 처음 상태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자율적 주체도 자기를 누리고 향유할 수 있으나 자기를 처분하거나 오남용해서는 안 되며 자기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둘째, 평등한 주체와 달리 자율적 주체는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평등한 지위만 주장하지 않는다. 타인의 지배에 종속되지 않으며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타인과 무관심한 관계에 머무르지 않으며 타인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예를 들어, 비행기의 승무원은 승객을 지배하지도 승객의 지배를 받지도 않는다. 그러나 승무원은 승객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승객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다. 평상시에는 승객의 필요를 채워주고, 비상시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상황에 맞게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승무원과 마찬가지로 자율적 주체는 타인을 한 비행기를 탄 동료 시민으로 생각하고 동료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세입자와 승무원에 비유될 수 있는 자율적 주체는 자기소유권에 대한 스튜어드십(stewardship) 개념의 해석에서 비롯된다. 자기소유권을 사유재산권과 정치적 주권의 근거로 처음 제시한 로크의 자기소유 개념은, 잉람에 따르면, 복층적이다. 즉, “개인의 신체와 자연적 능력은 신이 소유하지만, 각자는 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자신을 파괴하지 않는 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Ingram 1994, 31). 말하자면, 자기의 신체는 신의 소유이므로 자기가 처분할 수 없지만, 자기의 신체로부터 나오는 노동력은 자기의 것이므로 자기가 원하는 것과 교환할 수 있다. 그리고 잉람은 “자기의 신체는 궁극적으로 신의 재산이므로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인간 존재도 그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Ingram 1994, 31)라고 말한다. 이것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체로부터 나오는 노동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자기 신체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목적은 신의 소유인 자기 자신을 보존 및 관리하고 계발하고 실현하는 등의 일에 있다. 자기소유권을 이렇게 복층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두고 자기소유권의 스튜어드십 개념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스튜어드십 개념의 자기소유권은 칸트의 자기소유권에 관한 이해와도 일치한다. 사유재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칸트는 인간의 자기소유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구든지 자기의 주인(master, sui iuris)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의 소유자(owner, sui dominus)가 될 수는 없으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유재산을 처분하듯이) 자기를 처분할 수 없다. 더군다나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처분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자기의 인격 안에 있는 인간성(humanity)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Kant 1797, 6:270). 즉, 자기소유권은 자기를 향해서 처분권이 포함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의 인격 안에 있는 인간성의 보존 및 발전에 대한 책임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다.

자율적 주체의 공화 민주주의는 소유적 주체의 자유 민주주의와 평등한 주체의 공화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적 주체는 (1) 집단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2)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에 순응할 때도 자유의지를 발휘한다.

(1) 자기소유권의 스튜어드십 개념 해석에 근거한 자율적 주체는 집단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능을 보유하고 있다. 스투어드십 개념으로 자기소유권을 이해하는 자율적 주체는 자기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실현할 책임을 진 존재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자기를 보존하고 실현하는 책임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있으며 그 책임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사익만이 아니라 공익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 스투어드십 개념을 가진 자율적 주체는 주인이 명령하거나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다. 따라서 소유적 주체와 같이 간섭받지 않으며, 평등한 주체와 같이 지배받지 않는다. 그러나 자율적 주체가 누리는 자유는 불간섭이나 비지배가 아니라 자발성의 자유이다. 자율적 주체는 자기 외부적 간섭이나 지배를 거부하지만, 그것이 주어져도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않으므로 자유롭다. 아무리 자기 외부에서 간섭이나 지배가 자기의 생각과 행위를 제약해 들어와도 자기 내부에서 솟아나는 자발성을 꺾을 수는 없다.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권력의 간섭과 불평등한 위계적 권위의 지배에 저항하는 것은 불간섭이나 비지배의 소극적/부정적 자유가 아니라 자발성의 능동적/긍정적 자유이다. 자기의 자유의지를 지키고 발휘하려는 자율적 주체는 자발성의 적극적 자유를 추구한다.

자율 민주주의의 자유 개념: 조건, 원천, 본질

자기지배와의 차이점, 자기 절제

사실상 지능의 지배

지능의 지배는 지성주의/완전주의가 아닌 중립적 자율성을 추구

5. 나오는 글

참고문헌

- Bielefeldt, H. (1997) "Autonomy and Republicanism: Immanuel Kant's Philosophy of Freedom" *Political Theory* 25(4): 524-558.
- Christman, J. (1989) *The Inner Citadel: Essays on Individual Autonomy*. Brattleboro: Echo Point Books & Media.
- Christman, J. (2002) "Autonomy in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 Cohen, G. A. (1995) *Self-ownership, Freedom, and Equality*. Cambridge: CUP.
- Dworkin, G. (1988) *The Theory and Practice of Autonomy*. Cambridge: CUP.
- Elshtain, J. B. (2008) *Sovereignty: God, State, and Self*. New York: Basic Books.
- Ingram, A. (1994) *A Political Theory of Rights*. Oxford: OUP.
- Kant, I. (1797, 1996) *The Metaphysics of Morals*. trans. by Gregor, M. Cambridge: CUP.
- Kukathas, C. (2019) "Libertarianism Without Self-ownership"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36(2): 71-93.
-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 Lovett, F (2022) "Republicanism",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 Niederberger, A. & Schink, P. eds. (2013) *Republican Democrac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Nozick, R.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 Pateman, C. (2002) "Self-Ownership and Property in the Person: Democratization and a Tale of Two Concepts"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0(1), 20-53.
- Ryan, A. (1994) "Self-Ownership, Autonomy, and Property Rights"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11(2), 241-258.
- Seagrave, S. A. (2011) "Self-Ownership vs. Divine Ownership: A Lockean Solution to a Liberal Democratic Dilemm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5(3): 710-723.
- Seagrave, S. A. 2011. "Self-Ownership vs. Divine Ownership: A Lockean Solution to a Liberal Democratic Dilemm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5(3), 710-723.
- Thrasher, J. (2019) "Self-ownership as Personal Sovereignty"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36(2): 116-133.
- van der Vossen, B. & Schmidt, D. (2019) "The Problem of Self-ownership"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36(2): 1-8.